



주목할 만한 내용

1. 조세관리

- 재무부 관리 하에 세무 영역의 정기 보고 목록 공표 결정
- 본사와 다른 지역에 소재한 중속 단위의 부가가치세 ("VAT") 및 개인소득세 ("PIT") 신고납부

2. 법인세

- 선물, 기부 또는 보상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비용
- 1인 유한책임회사 소유자의 급여에 대한 CIT
- 노동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건강보험에 포함되지 않은 지원비용
- 계산서 및/또는 증빙서류가 없이 해외 항구에서 컨테이너 보관을 위해 고객에 대한 지원비용
- 제92/2021/ND-CP호 시행령에 따라 2019년에 신규 설립된 기업대한 법인세 감면
- 투자허가서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 활동 수행

3. 간접세 ("VAT")

- 비상업적 수입품의 매입 VAT
- 전기선 장비 가공업체에 대한 VAT세율
- 내국수입 원자재에 대한 VAT 공제 및 환급
- 사용 대여후 반납된 물품에 대한 계산서
- 해외기업에게 경영보고서 작성 서비스가 서비스 수출로 간주됨
- 전기차량에 대한 특별소비세율 ("SCT")

4. 개인소득세 (PIT)

- 베트남 기업과 체결한 컨설팅 서비스 계약으로 인한 소득을 발생한 외국인 개인의 PIT
- 개인이 단체를 대신하여 받은 보너스에 대한 PIT 결정

5. 외국인계약자세 ("FCWT")

- 페이스북 온라인 광고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FCWT
- 외국조직에 납부한 회비에 대한 FCWT
-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FCWT

6. 무역 및 관세

- 기업의 자발적 관세규정 준수 권장을 위한 시범 프로그램
- 초과 납부된 수입 VAT에 대한 환급
- 인센티브 적용된 투자프로젝트에 고정자산 형성을 위해 수입한 면세품 양도
- 수출가공기업한테서 대여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정책

조세관리



신규 규정

재무부 관리 하에 세무 영역의 정기 보고 목록 공표 결정

재무부는 2022년 7월 15일에 세무 영역의 정기 보고 목록을 공표하는 제1421/QD-BTC호 결정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 신규 보고 제도:** 수수료 영수증 (전자 영수증의 경우) 사용 현황에 대한 보고.
- 대체 보고 제도** 아래와 같이 포함된다:
 - 계산서 사용현황에 대한 보고 (세무당국한테서 구매한 인쇄 세금 계산서의 경우)
 - 수수료 영수증 사용 현황에 대한 보고 (종이 영수증의 경우)
 - 세무당국에 제출한 전자 스탬프 데이터 종합 보고
 - 세무 당국에 제출한 전자 계산서 데이터 종합 보고
- 폐지된 보고제도** 아래와 같이 포함된다:
 - 세금 계산서 인쇄/ 세금계산서 자체 인쇄 소프트웨어 제공에 대한 보고
 - 세금 계산서 인쇄/ 세금계산서 자체 인쇄 소프트웨어/ 전자 영수증 솔루션 제공에 대한 보고서
 - 계산서 지급 명세서 (Form No. CTT 25/AC).

(재무부의 2022년 7월 15일 제1421/QD-BTC호 결정)

본사와 다른 지역에 소재한 종속 단위의 부가가치세 ("VAT") 및 개인소득세 ("PIT") 신고납부

1. VAT 신고납부:

- 기업의 종속단위(지사)가 사업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데 매출/매입 VAT를 회계 기록하지 않는 경우 본사가 2022년 10월 19일 제126 /2020/ND-CP호 제 11조 2항에 따라 본사와 다른 지역 지사의 VAT를 계산하여 본사를 직접 관리하는 세무국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제80/2021/TT-BTC호 제13조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는 각 지역에 납부해야 하는 VAT 금액을 배분해야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다.
- 기업의 종속단위(지사)가 직접 사업 활동을 수행하고 지사의 성급 세무국에 본사가 등록된 계산서를 사용하고 매입 VAT 및 매출 VAT를 완전히 회계인식한 경우 각 지사는 제80/2021/TT-BTC호 시행규칙 제13조 4항에 따라 지사를 직접 관리하는 세무국에 VAT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2. 개인소득세("PIT") 신고 및 납부:

- 본사와 다른 지역에 소재한 종속 지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급여,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규정에 따라 급여 소득에 대한 PIT를 공제하고 (제80/2021/TT-BTC호 시행규칙의 부록 II와 함께 발행된) Form 05-1/PBT-KK-TNCN로 세금 신고서 및 Form 05-1/ PBT-KK-PIT로 담당 지역 세무국에 납부해야 한 세액 확인부록을 본사를 직접 관리하는 세무국에 제출한다.
- 동시에 기업은 제80/2021/TT-BTC호 시행 규칙 제12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직원이 근무하는 각 성의 국가예산에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 개인소득세 금액은 기업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각 지역에 대해 결정되며 확정신고 시 재계산되지 않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2년 7월 18일 제34790/CTHN-TTHT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법인세 (“CIT”)



신규 규정

선물, 기부 또는 보상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비용

회사가 선물, 기부 또는 보상으로 받은 자산은 제45/2013/TT-BTC호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고정자산으로 확인된다. 회사가 규정에 따라 이러한 고정자산을 감가상각할 책임이 있다.

선물, 기부 또는 보상으로 받은 고정 자산에 대한 회사의 소유권을 증명하도록 충분한 증빙서류가 없으면 해당 감가상각비용은 CIT 목적상 공제되지 않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2년 7월 28일 제36818/CTHN-TTHT호 OL)

1인 유한책임회사 소유자의 급여에 대한 CIT

1인 유한책임회사 소유자 또는/ 및 경영진, 이사회 구성원에게 지급된 급여, 수당 비용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CIT 목적상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처리된다:

- 이 개인들이 사업 생산 및 운영 관리에 직접 참여한다; 및
- 지급된 급여, 수당에 대한 조건 및 기준이 다음 서류 중 하나에 세부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근로계약, 단체 노동 협약, 회사의 재정 규정, 회사의 재무 규정에 이사회, 총무이사, 이사의 보너스 규정.

(다낭 세무국의 2022년 7월 29일 제4300/CTDAN-TTHT호 OL)

노동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건강보험에 포함되지 않은 지원비용

회사가 노동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않은 지원금을 (건강보험 제외) 지급하면 해당 지원비용이 다음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CIT 목적상 공제 가능하다:

- 법규정에 따라 적합하고 충분한 증빙서류를 가춰야 한다; 및
-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된 복리후생 비용은 해당 과세연도에 회사의 평균1개월 급여를 불과해서는 안된다.

(Hai Duong 세무국의 2022년 7월 27일 제7263/CTHDU-TTHT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법인세 (“CIT”)



지침 문서

계산서 및/또는 증빙서류가 없이 해외 항구에서 컨테이너 보관을 위해 고객에 대한 지원비용

회사가 고객이랑 합의한 대로 (계약서 및 계약서 부록에 명시되지 않음) 물품 검사 대기 시 해외 항구에서의 컨테이너 보관을 위해 고객에게 지원된 비용은 관련 계산서 및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재무부의 2015년 6월 22일 제96/2015/TT-BTC호 시행규칙 제4조 1항에 따라 CIT 목적상 공제되지 않다.

(Vinh Long 세무국의 2022년 7월 26일 제881/CTVLO-TTHT호 OL)

제92/2021/ND-CP호 시행령에 따라 2019년에 신규 설립된 기업대한 법인세 감면

2019년에 운영 시작하고 매출을 창출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제406/NQ-UBTVQH15호 결의 및 제92/2021/ND-CP호 시행령에 따라 법인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

2019년에 신규 설립되어 운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기업의 2019년 과세기간의 매출은 해당과세연도의 실제 수익을 사업 운영 개월수로 나눈 값에 12개월을 곱한 값으로 계산한다. 해당 기업이 월중에 설립된 경우, 운영기간은 1개월로 계산한다.

(세무총국의 2022년 7월 21일 제2594/TCT-CS호 OL)

투자허가서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 활동 수행

100% 외국인 투자기업 (수출가공기업 아님)이 투자허가서에 수입, 수출, 도매 및 소매 유통 활동을 등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생산능력 부족으로 인해 거래처에 재화 (회사가 생산하는 재화와 유사한 종류)의 구매 및 판매 활동을 한 경우,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재화나 용역이 아닌 경우라면, 이러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박닌 세무국의 2022년 8월 1일 제2306/CTBNI-TTHT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간접세 (“VAT”)



지침 문서

비상업적 수입품의 매입 VAT

회사가 VAT 과세 상품의 생산 및 거래활동을 위해 무상사급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수입 단계에서 납부한 매입 VAT를 공제 가능하다:

- 구매한 물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합법적인 VAT 영수증 또는 수입 단계에서 VAT 납부 증빙서류가 있음, 및
- 2천만동 이상의 수입물품에 대한 비현금 결제 증빙서류가 있음.

(Binh Duong 세무국의 2022년 8월 8일 제12802/CTBDU-TTHT호 OL)

내국수입 원자재에 대한 VAT 공제 및 환급

기업이 수출품을 제조하기 위해 자재를 수입하고 (내국수입 물품 포함) 수입단계에서 관세를 신고하고 수입 VAT를 납부한 경우 회사의 수입활동 (내국수입 포함) 및 수입품이 규정에 의한 조건 및 절차를 충족하면 수입단계에 납부한 매입 VAT가 공제/환급 가능하다.

(Hai Duong 세무국의 2022년 8월 4일 제7573/CTHDU-TTHT호 OL)

전기선 장비 가공업체에 대한 VAT세율

업체가 다양한 종류의 전기선 장비를 가공하는 경우 이러한 가공품은 제15/2022/ND-CP호 시행령에 따라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VAT 감면 대상이 아니며 VAT 10%이 적용된다.

(Hai Duong 세무국의 2022년 8월 5일 제7602/CTHDU-TTHT호 OL)

사용 대여후 반납된 물품에 대한 계산서

회사가 고객에게 시험 사용으로 물품을 대여한 후 반납 받을 경우

- **회사가 고객에게 물품을 대여할 때:** 회사는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산서상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기재해야 한다; 및
- **고객에게 대여한 물품을 반납 받을 때:** 빌리는 고객이 물품 반납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양측은 규정에 따라 VAT 신고, 납부, 정산할 의무가 있다.

(Hai Duong 세무국의 2022년 8월 4일 제7535/CTHDU-TTHT호 OL)

해외기업에게 경영보고서 작성 서비스가 서비스 수출로 간주됨

회사가 해외기업에게 경영보고서 작성용역을 직접 제공하고 보고 결과물이 베트남 영토 밖에서 사용되는 경우 법규정에 의한 조건을 충족하면 (해외 기업과의 서비스 계약 및 은행 결제 증빙서류가 있음), 해당 서비스는 VAT 0%가 적용된다.

(Ha Noi 세무국의 2022년 7월 18일 제34786/CTHN-TTHT호 OL)

전기차량에 대한 특별소비세율 (“SCT”)

기업이 9인승 이하 배터리 구동 전기차를 수입하는 경우, 2022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SCT 3%가 적용된다.

기업이 수입 통관신고서의 등록 날짜 및 실제 수입된 재화를 근거하여 적용할 SCT 세율을 확인이 필요하다.

(관세총국의 2022년 3월 28일 제1029/TCHQ-TXNK 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개인소득세 (PIT)



지침 문서

베트남 기업과 체결한 컨설팅 서비스 계약으로 인한 소득을 발생한 외국인 개인의 PIT

- 외국인 개인이 상인인 경우 개인 사업자로 간주된다. 컨설팅 서비스 계약으로 인한 개인의 소득은 규정에 따라 FCWT (VAT 및 PIT 포함) 과세된다. 베트남 회사가 세금을 징수하고 재무부의 2021년 6월 1일 제40/2021/TT-BTC의 제01/CNKD호 양식에 따라 외국인 개인을 대신하여 세금을 신고, 납부할 책임을 있다.
- 외국인 개인이 상인이 아닌 경우 개인 사업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컨설팅 서비스 계약으로 인한 개인의 소득은 급여, 임금에 대한 소득은 PIT 과세된다. 베트남 회사가 아래와 같은 세율로 징수하고 외국인 개인을 대신하여 세금을 신고, 납부할 책임을 있다:
 - 외국인 개인이 거주자인 경우: PIT 10%
 - 외국인 개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PIT 20%
 - 외국인 개인이 거주자이며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함: 누진PIT세율

- 외국인 개인 사업자의 경우 외국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명서 등 사업자 자격 증명서류를 보유해야 한다. 베트남에서 사용된 외국서류가 외교부의 2021년 3월 20일 영사 합법화 지침에 대한 제01/2021/TT-BNG호 시행규칙에 따라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Binh Duong 세무국의 2022년 8월 4일 제/12715/CTBDU-TTHT호 OL)

개인이 단체를 대신하여 받은 보너스에 대한 PIT 결정

기업이 개인 이름 언급 없이 단체에게 보너스를 지급하는 경우 (이 보너스는 단체가 공동적으로 사용하고, 개인이 단체를 대신하여 보너스를 받은 대표자일 뿐임), 이런 보너스가 단체를 대표하여 보너스를 받은 개인의 PIT과세소득에 제외되므로 회사가 이보너스에 대한 PIT를 징수할 필요가 없다.

(Ha Noi의 2022년 7월 19일 제/35192/CTHN-TTHT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외국인계약자세 ("FCWT")



지침 문서

페이스북 온라인 광고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FCWT

해외 공급자가 제80/2021/TT-BTC호 시행규칙의 제76,77,78조에 따라 베트남에서 세금 등록, 신고 및 납부를 이미 완료한 경우, 이 해외 공급자의 서비스를 구매하는 베트남 조직은 해외 공급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신고, 납부할 필요가 없다.

(Ha Noi 세무국의 2022년 7월 28일 제36815/CTHN-TTHT 호 OL)

외국조직에 납부한 회비에 대한 FCWT

베트남 기업이 세계풍력에너지협회 ("GWEC")에 참여하여 GWEC Asia Ltd (싱가포르 본사)에 회비를 납부한 경우 해당 외국조직이 베트남 법인과 계약, 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발생하는 경우 제103/2014/TT-BTC호 시행규칙에 따라 FCWT의무 (VAT, CIT)를 수행해야 한다.

(Ha Noi 세무국의 2022년 7월 18일 제34794/CTHN-TTHT호 OL)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FCWT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없고 베트남 법률에 따라 영업하지 않은) 외국인 계약자는 X사(베트남)와 체결한 계약을 통해 Y사(베트남) 지분양도로 인해 소득을 발생한 경우, 이 주식양도에 의한 소득은 FCWT 과세 대상이다.

외국계약자가 제103/2014호/TT-BTC호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지 못 할 경우 베트남 당사자가 외국인계약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신고, 납부할 책임이 있다. 구체적으로 세금 계산, 신고는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투자 자본 양도활동으로 확인되는 경우:

- VAT: 투자 자본양도활동은 제219/2013/TT-BTC호 시행규칙, 제8.d조에 따라 VAT비과세 대상이다.
- CIT: 외국인 계약자의 자본양도활동에 대한 CIT 산정은 제78/2014/TT-BTC호 시행규칙, 제14조 (제96/2015/TT-BTC호 시행규칙, 제8조로 개정됨)에 따라 수행한다.

- 자본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시점은 자본 소유권이 양도된 시점이다.

증권양도활동으로 확인되는 경우:

- VAT: 증권양도활동은 제219/2013/TT-BTC호 시행규칙, 제 4.8.d조에 따라, VAT의 비과세대상 이다.
- CIT: 외국인 계약자의 증권양도활동에 대한 CIT 산정은 제103/2014/TT-BTC호 시행규칙, 제4조, 8조에 따라 수행한다.

(Hanoi 세무국의 2022년 8월 1일 제37372/CTHN-TTHT 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무역 및 관세



관세총국에 의한 결정

기업의 자발적 관세규정 준수 권장을 위한 시범 프로그램

관세총국은 2022년 7월 15일, 제1399호/QD-TCHQ호 결정서를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발행했다:

- 법적 준수 수준을 개선하고, 수출입 물품에 대한 물리적 검사 빈도를 최소화함으로써 무역을 촉진하고 기업의 비용을 절감한다.
- 기업이 통관절차 이행에 따른 고려 및 어려움을 대응하도록 지원하고, 통관규제 위반의 예방 및 회피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며, 기업의 법규 준수 능력을 향상시킨다.
- 무역 활동을 원활화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출입 및 운송 활동 측면에서 관세당국과 기업 간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이 프로그램은 2단계로 실행된다.

- **시범단계:** 본 결정의 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현실적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 단계가 종료한 후 프로그램의 측정, 평가 및 수정에 대한 보고를 작성한다.
- **정식적인 실시단계:** 시범단계 종료 후, 초기평가는 1년에 한 번 수행한다. 본 결정의 발행일로부터 5년 후에,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 및 효과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본 프로그램의 회원 기업에 대한 상담 및 지원 활동은 기업의 요청 및 상황에 따라 전화,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고 또한, 기업의 준수수준을 향상시키고 관세 법규정 위반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 프로그램에 가입한 기업과 MOU 체결, 파트너십 협회 또는 유관기관과 협력 프로그램, 세미나,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참가 요건:

- 관세당국의 2019년 11월 15일 제81/2019/TT-BTC호 시행규칙에 따라 정보 업데이트 완료에 대하여 관세당국에 의해 확인을 받는 기업.
- 365일 이상 수출입활동을 해왔으며 관세당국에 의해 준수수준 향상이 필요된 것으로 평가된 기업.
- 관세당국한테서 프로그램 참여 초청장을 받고, 자발적으로 참여 등록하는 기업, 협회.

관세당국 담당자가 MOU 서명 절차를 수행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의 회원자격을 통보, 철회를 시행한다.

(관세총국의 2022년 7월 15일 제1399/QD-TCHQ 호 결정서)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지침 문서

초과 납부된 수입 VAT에 대한 환급

기업이 전년도의 초과 납부된 수입 VAT에 대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관세당국은 환급 결정을 발행하기 전에 현지 관세국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 납세자가 초과 납부 VAT에 대한 환급 서류의 제출일전 12개월 이내에 관세, 조세 규정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위반하므로 유관기관에 의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됨;
- 납세자가 형사 기소되어 있는 그룹의 구성회사 또는 형사 기소되어 있는 회사와 같은 그룹의 구성회사임;
- 납세자가 VND 500 mil 이상의 VAT금액을 환급 신청함;
- 납세자가 초과 납부 VAT의 환급 신청서류의 불일치 사항을 설명하지 못 함;
- 납세자의 초과 납부 VAT 환급 서류를 처리하는 동안 의심스러운 사항

관세당국은 모니터하고 세무당국과 협력해야 한다. 관세당국은 세무당국으로부터 회신을 받는 후에 법적근거 및 납세자의 초과 납부 VAT 환급 신청 서류를 근거하여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즉시 회신해야 한다.

전년도의 초과 납부된 VAT에 대한 환급의 경우 기업이 현지 세무국에 VAT를 신고하지 않거나 환급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도록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관세당국은 현지 세무국으로부터 추가 정보를 더 이상 수집할 필요가 없다.

(관세총국의 2022년 7월 22일 제2999/TCHQ-TXNK호 OL)

인센티브 적용된 투자프로젝트에 고정자산 형성을 위해 수입한 면세품 양도

인센티브 적용된 투자프로젝트에 고정자산 형성을 위해 면세된 수입품이 그 이후에 다른 업체로 이전되는 경우 수령자는 신규 관세 신고서를 등록해야 하며 수입세가 면제된다. 면세품을 이전하는 단체, 개인은 면제된 수입세를 상환할 필요가 없다.

인센티브 적용된 투자프로젝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단체나 개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프로젝트 소유자는 사업에 따라 이전된 물품의 면제된 수입관세를 상환할 필요가 없다. 수령단체와 개인이 이전 받은 물품에 대한 신규 관세신고서를 등록해야 하며 규정조건을 충족하면 이전된 물품의 수입세를 면제 받는다.

(관세총국의 2022년 8월 8일 제3271/TCHQ-TXNK 호 OL)

수출가공기업한테서 대여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정책

국내기업은 영업생산을 위해 임대차계약으로 수출가공기업한테서 물품을 임대 받은 경우에 제107/2016/QH13호 수출입관세법 제16.9.a조에 따라 수입관세를 면제 받을 수 없다.

국내기업은 임시수입시 수입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제107/2016/QH13호 수출입관세법 제19.1.d조에 따라 재수출시 납부된 수입관세를 환급 받을 수 없다.

(관세총국의 2022년 8월 8일 제3269/TCHQ-TXNK 호 OL)

무역 및 관세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Contact us



Thomas McClelland
National Tax Lead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Bui Tuan Minh
Tax Partn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105 0023
ngavu@deloitte.com



Tat Hong Quan
Tax Partner
+84 28 7101 4341
quantat@deloitte.com



Son Won Sik
KSG Director
+84 93 445 6850
wonsikson@deloitte.com



Kim Sun June
KSG Director
+84 90 119 7014
sunjunkim@deloitte.com

Hanoi Office

15th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Ho Chi Minh City Office

18th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Deloitte.

MAKING AN
IMPACT THAT
MATTERS
since 1845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each of which may be referred to or known as Deloitte Vietna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